상품특징

• 주택가격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, 2 자녀(미성년자)가구, 다자녀(미성년자)가구는 7천만원 이하.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, 신혼가구(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)는 8천5백만원 이하) 이하인 자에게 호당 2억원[단, , 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3억 2천만원,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(미혼 단독세대주 제외)는 2억 4천만원,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)] 이내에서 지원

주)

대출신청자격

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고객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고객1.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 상 성년이며, 부양가족 있는 세대주(만 30세 이상은 단독세대주도 가능)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로서,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현재 무주택인 분 (생애최초주택구입자는 생애 전 기간 무주택)※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유주택자로 적용단, 2018.9.13 이전 해당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후 처분하여 주택취득 이력이 없는 경우 무주택자로 보고,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적용2. 최근년도 또는 최근 1년간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분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□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7천만원이하,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 □ 신혼가구(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)는 8천5백만원이하)3.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(기준 금액은 매년 변동 / 자산심사 기준은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포털 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가능) 이하인 자

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
- 10년, 15년, 20년, 30년
-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후 원리금(또는 원금) 균등분할상환, 체증식 분할상환

대출대상주택

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 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* 단,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60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㎡) 이하 주택만 가능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 주) 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

대출신청시기

소유권 이전등기 전에 신청.다만,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

대출한도

담보평가 및 소득금액 등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원 이내(단, 신혼가구, 2 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3억 2천만원,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(미혼 단독세대주 제외)는 2억 4천만원,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) 이내)* LTV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%(수도권·규제지역은 70%) 이내)*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미차감 가능* 매매(분양)가격 이내로 하되, 대출총액은(본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+ 국민주택건설자금 + 중도금대출 + 기금대출)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

금리 및 이율리스트 펼치기

기본금리

• 기본금리(A): 연 2.85%~4.15%(2025.07.04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, 10 년 고정 후 변동금리, 5년단위 변동금리, 변동금리)*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*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*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(서울, 인천, 경기지역이외)인 경우에는 아래 기본금리에서 0.2%p인하

소득수준	만기			
	10년	15년	20년	30년
부부합산 연소득2 천만원 이하	연 2.85%	연 2.95%	연 3.05%	연 3.10%
부부합산 연소득2 천만원 초과4천만 원 이하	연 3.20%	연 3.30%	연 3.40%	연 3.45%
부부합산 연소득4 천만원 초과7천만 원 이하	연 3.55%	연 3.65%	연 3.75%	연 3.80%
부부합산 연소득7 천만원 초과8천5 백만원 이하(신혼 가구)	연 3.90%	연 4.00%	연 4.10%	연 4.15%

대출금리

- 가산금리(B):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 금리 선택시 0.3% 가산
- **우대금리(C)**: 다음 항목 중 한가지 항목 적용 가능(단, 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, 부동산 전자계약,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가구, 대출한도 30%이하 신청, 원금 중도상환 금리우대 금리우대는 중복적용 가능)*우대금리는 최대 0.5%(다자녀 가구는 0.7%)까지 적용 가능 합니다.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*: 연 0.5%p한부모 가족 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 또는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자 또는 모자가구로서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6세 이하 미취 학 아동과 6개월 이상 합가되어 있는 가구생애최초주택구입자·장애인·다문화·신혼가구 : 각 연 0.2%p(생애최초주택구입자, 신혼가구 우대금리는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(단,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우대금리는 생애 전기간 무주택이며 기금 최초주택구입(중도금)대출을 이용한 이력이 없는 경우 적용)다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3인 이상)연 0.7%p, 2자녀가구(미 성년 자녀* 2인)연 0.5%p,1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1인)연 0.3%p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 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(세대분리된 자녀 포함)(단 자녀★ 1명당 5년간 적용, 최대 15년 적용)청약(종합)저축 장기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,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시에만 적용, 신규 분양아파트(담보목적물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포함. 대출실 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):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ㅇ가입기간(납입회차) 에 따라 5년(60회차)연 0.3%p, 10년(120회차)연 0.4%p, 15년(180회차)연 0.5%p 적용 (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) ㅇ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 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0.3%p, 10년 이상 연0.4%p, 15년 이상 연0.5%p 적용*대출신 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 하나, 선납은 포함*청약예금·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 통장 포함)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(종합) 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*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부동산 전자계약: 연 0.1%p (2025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. 단,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. 1.1이후인 경우 대출 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)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: 연 0.2%p (조세특 례제한 법령에 따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. 다만,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% 이하로 대 출신청시 적용(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연 0.1%p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 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(분할상환 제 외,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, 금리우대 기준 충족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):연 0.2%p
- 적용금리(A+B-C):연 1.95%(중복 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 시) ~ 연 4.45%

신혼가구(생애최초)

•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(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포함)인 경우

- 기본금리(A): 연 2.55%~연 3.85%(2025.07.04 기준,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고정금리,10년 고정 후 변동금리, 5년단위 변동금리, 변동금리)* 체증식 분할상환 선택 시 고정금리만 적용 가능
- * 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* 대출대상 주택이 지방 소재(서울, 인천, 경기지역 이외)인 경 우에는 아래 특례금리에서 0.2%p인하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라 변동사항을 소득수준, 만기(10 년, 15년, 20년, 30년)를 안내하는 표입니다.소득수준만기10년15년20년30년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원 이하연 2.55%연 2.65%연 2.75%연 2.80%부부합산 연소득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연 2.90%연 3.00%연 3.10%연 3.15%부부합산 연소득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연 3.25%연 3.35%연 3.45%연 3.50%부부합산 연소득7천만원 초과8천5백만원 이하연 3.60%연 3.70%연 3.80%연 3.85%가산금리(B):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 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금리 선택시 0.3% 가산우대금리(C):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 능(단, 다자녀가구/ 2자녀가구/ 1자녀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불가)*우대금리는 최대 0.5% (다자녀 가구는 0.7%)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 - 다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3인 이상) : 연 0.7%p, 2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2인) : 연 0.5%p, 1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1인) : 연 0.3%p* 가족관 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(세대분리된 자녀 포함)(단, 자녀* 1 명당 5년간 적용, 최대 15년 적용)- 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, 대출신청 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, 신규 분양아파트(담보목적물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, 대출 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ㅇ 가입기간(납입회차) 에 따라 5년(60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 (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) 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*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, 선납 은 포함*청약예금·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(종합) 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※ 대출기간 중 금 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- 부동산 전자계약: 연 0.1%p (2025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. 단,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. 1.1이후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)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: 연 0.2%p (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. 다만,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- 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%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(대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 : 연 0.1%p- 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대 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 (분할상환 제외,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, 금리우대 기 준 충족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) : 연 0.2%p적용금리(A+B-C): 연 1.65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 금리 적용시)~ 연 4.15%* 적용금리는 대출실행 후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또는 변경 금리 적용전임
 - 가산금리(B): 5년단위 변동금리 선택시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 선택시 0.2%p, 고정 금리 선택시 0.3% 가산

- **우대금리(C)**: 아래 항목 중복 적용 가능(단, 다자녀가구/ 2자녀가구/ 1자녀가구 우대금리는 중복적용 불가)*우대금리는 최대 0.5%(다자녀 가구는 0.7%)까지 적용 가능합니다.다자 녀가구(미성년 자녀* 3인 이상): 연 0.7%p, 2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2인): 연 0.5%p, 1 자녀가구(미성년 자녀* 1인): 연 0.3%p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인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(세대분리된 자녀 포함)(단, 자녀* 1명당 5년간 적용, 최대 15년 적용)청약 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,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, 신 규 분양아파트(담보목적물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, 대출실행일로부터 최대 5년간 적 용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 ㅇ 가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년(60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(가입기간 및 납입회차 요건 모두 충족시)ㅇ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* 대출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에 연체된 회차를 일괄 납입한 경우 우대금리 인정대상 회차에서 제외하나, 선납은 포함*청 약예금·청약부금,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(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포함)으로 전환·가 입하는 경우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·가입하는 경 우 기존 청약(종합) 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*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 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부동산 전자계약: 연 0.1%p (2025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 적용. 단, 자산심사신청일이 2025. 1.1이후인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년 간 해당 우대금리 적용)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가구: 연 0.2%p (조세특례제한 법령에 따 라 수도권 이외 소재 주택에 대하여 미분양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은 가구. 다만, 대출실행일 로부터 5년간 적용)대출 심사를 통해 산정한 대출금액의 30% 이하로 대출신청시 적용(대 출실행일로부터 5년간 적용): 연 0.1%p대출실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 중도상환한 금액이 대출 원금의 40% 이상인 경우 대출잔액에 대해 금리우대 적용 (분할상환 제외, 2024.7.31 이후 중도상환분에 한함, 금리우대 기준 충족시 조건변경 신청 필요): 연 0.2%p
- 적용금리(A+B-C): 연 1.65%(중복가능한 모든 우대금리 적용시)~ 연 4.15%

대출실행 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

-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대출실행후 자산기준 초과자로 통보받은 경우
-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.2%p 가산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.0%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, 상환방법, 우대금리,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원금 및 이자 선납
-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(분할상환인 경우) 및 이자 선납 제한중도상환수수료
-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.2%,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(1.2%) x [(3년 대출경과일수)/3년]
 - •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

-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금리에 연 0.2%p 가산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금리에 연 3.0%p 가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, 상환방법, 우대금리,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
- • 대출 실행일로부터 3개월 동안 원금(분할상환인 경우) 및 이자 선납 제한
- • 대출취급 후 3년 이내 1.2%, 3년 이후 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없음
- 중도상환수수료 = 중도상환원금 x 수수료율(1.2%) x [(3년 대출경과일수)/3년]

이용조건리스트 감추기

담보해당 주택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

유의사항 및 기타리스트 펼치기

기타▶ 성년인 세대원 중 1인 이상 (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, 결혼예정 배우자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)이 기금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※단, 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 대출은 가능▶ 차주 및 배우자(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)는 한국신용정보원 대출정보조회를 결과 다른 목적 물로 주택담보(중도금)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불가합니다.▶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전심사방식인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공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중이면 대출이 불가합니다.※ 단, 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▶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 주택금융공사의 보증(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)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.※ 단,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기 가능

상품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<변경내용>□ LTV 규제 강화 (수도권·규제지역 LTV 최대 70%) 다출 한도 축소<기존고객적용여부>부 (2025.06.28 이후 계약 체결 건 적용)<시행일 신청건부터 적용)<시행일>2025.04.10-----------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상 및 지방소재 0.2%p 금 리인하 변경전: (일반) 연 2.65% ~ 연 3.95%, (생애최초 신혼가구) 연 2.35% ~ 연 3.65% 변 경후: (일반) 연 2.85% ~ 연 4.15%, (생애최초 신혼가구) 연 2.55% ~ 연 3.85% <기존고객적 용여부>적용<변경내용>□ 금리적용방식 추가 및 금리적용방식에 따른 가산금리 신설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신설 5년단위 변동금리는 0.1%p, 10년 고정후 변동금리는 0.2%p, 만기까지 고정 금리는 0.3% 가산口 금리우대 적용가능한 상한 금리 설정口 금리우대 항목 삭제 및 추가 삭제 -신규 분양주택 가구 우대금리 (0.1%p) 추가 -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가구 우대금리 (0.2%p)□ 자녀 금리우대항목 중복적용 불가 및 최대 적용기한 설정 변경전- 다자녀/2자녀/1자 녀 금리우대 타 금리우대와 중복적용 가능 변경후- 다자녀/2자녀/1자녀 금리우대 타 금리우대와 중복적용 불가 및 자녀 1명당 5년간 적용口 내집마련 디딤돌 실거주 기간 변경 (변경 전) 1년 -> (변경 후) 2년<기존고객적용여부>부<시행일>2025.03.24-----

가액 기준금액 변경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신청기한 연장 및 적용기한 제한<시행일 >2025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□ 부
신혼부부)금리 추가- 변경전 : 고정, 5년단위 변동- 변경후 : 고정, 5년단위 변동, 변동<시행일 >2024.07.3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
부
용>□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금액 변경 변경전 : (2022년 기준, 5억 6백만원) 변경후 : (2023년 기준, 4억 6천 9백만원)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 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 : 2024.12.31 신규 접수분까지<시행일>2024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 부
~
<변경내용>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일반 : 연 2.15% ~ 연 3.00%, 생애최초 신혼가

구 : 연 1.85% ~ 연 2.70% 변경후 🗆 일반 : 연 2.45% ~ 연 3.3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2.15% ~ 연 3.00%□ 청약(종합)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□ 변경전- 청약(종 합)저축 장기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,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, 신규 분양아 파트(담보목적물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, 청약 예口부금 등은 적용 불가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ㅇ 가입기간이 1년(3년) 이상이고 12회차(36회차)이상 납입한 경우 연 0.1%p(연 0.2%p)ㅇ 민영주택 지역별 청약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(3년)이상인 경우 연 0.1%p(연 0.2%p) 다변경후- 청약(종합)저축 장기 가입자(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, 대출신청일 현재 자격충족 시에만 적용, 신규 분양아파트(담보목적물) 당첨에 따라 해지된 계좌 포함, 청약 예 □부금 등은 적용 불가):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(택1) ○ 가입기간(납입회차)에 따라 5 년(60회차) 연 0.3%p, 10년(120회차) 연 0.4%p, 15년(180회차) 연 0.5%p 적용ㅇ 민영주 택 청약 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연 0.3%p, 10년 이상 연 0.4%p, 15년 이상 연 0.5%p 적용*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에 적용된 청약(종합)저축 해지시 우 대금리 적용이 제외되며, 대출기간 중 금리우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우대금리 적용 불가<시행일 >2023.08.30<기존고객적용여부>□ 기본금리 인상 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리(적용)□ 청 약(종합)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적용기준 변경 : 미적용----------<변경내용>□ 생애최초 특례구입자 금보증 도입에 따른 대출한도 내용 상세화 대출한도 추가내용* LTV: 70% 이내(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로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80% 이내)*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 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가능한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 금 미차감 가능 기타 추가내용▶ 차주 및 배우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(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외)을 이용중이면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이 불가합니다. ※ 단, 대출실행일까지 기존 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가입 가능<시행일>2023.07.03<기존고객 -----<변경내용>□ 부동산 전자계약 금리우대(0.1%) 적용 기준 변경 변경전 : 폐지 변 경후 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口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-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 : 3 억 1천만원 변경후-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 : 4억원□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- 주택가격 5 억원 이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 하 주택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주)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- 주택가격 5억원 이 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 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주)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<시 행일>2023.02.10<기존고객적용여부>부-----전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적용- 변경후: 폐지<시행일>2023.01.01<기존고객적용여 부>부-----------□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-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 : 4억원 변경후- 2자녀(미성년 자) 이상인 가구 : 3억 1천만원□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-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(주택가격기준 별도확 인)주)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변경후- 주택가격 5억원 이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 택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주)신혼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<시행일>2023.01.01<기존고

객적용여부>부------□ 대상주택 변경 변경전- 주택가격 5억원 이하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 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 변경후- 주택가격 5억원 이 하주)인 주거전용면적 85㎡ 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 100㎡)이하 주택 (주택가격기준 별도확인)주)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주택가격 6억원 이하□ 대출한도 변경 변경전-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 만원 이내(단, 신혼가구는 2억 7천만원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3억 1천만원,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 이내) 변경후- 담보평가 및 소득금액에 따른 대출가 능금액 이내에서 호당 최고 2억 5천만원 이내[단, 신혼가구, 2자녀(미성년자) 이상인 가구는 4억 원, 생애최초 주택구입가구(미혼 단독세대주 제외)는 3억원, 만 30세 이상 미혼인 단독세대주는 최고 1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2억원) 이내]ㅁ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 변경 변경전 : (2021년 기준, 4억 5천 8백만원) 변경후 : (2022년 기준, 5억 6백만원) 다 부동산 전자 계약 우대기간 연장 변경전: 2022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변경후: 2023.12.31 신규 접수분까 지<시행일>2023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부----------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상 변경전 □ 일반 : 연 2.00% ~ 연 2.75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45% 변경후 🗆 일반 : 연 2.15% ~ 연 3.0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85% ~ 연 2.70% 다 우대금리 요건 명확화 청약 (종합)저축 장기가입자 우대금리 요건 추가* 청약종합저축 이용 중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 환·가입하는 경우 기존 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·회차·금액을 포함함□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변경전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.0% 고정금리 적용 변경후▶ 소득4분위 기준으로 초과된 금액 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3.0%p 가산<시행일>2022.04.11<기존고객적 용여부>ㅁ 기본금리 인상 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리(적용)ㅁ 자산기준 과중초과자에 대한 가 산금리 부과기준 변경 : 미적용------(2020년 기준, 3억 9천 4백만원)변경후 : (2021년 기준, 4억 5천 8백만원)□ 대출한도 상향변 경전 □ 일반가구 : 2억원 이내, 신혼가구 : 2억 2천만원 이내, 다자녀·2자녀 가구 : 2억 6천만원 이내변경후 🗆 일반가구 : 2억 5천만원 이내, 신혼가구 : 2억 7천만원 이내, 다자녀·2자녀 가구 : 3억 1천만원 이내□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기간 연장변경전 □ 2021.12.31 신규 접수분까지변경 후 🗆 2022.12.31 신규 접수분까지<시행일>2022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🗆 부------금리 인상변경전 - 일반 : 연 1.85% ~ 연 2.40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55% ~ 연 2.10% 변경후 - 일반 : 연 2.00% ~ 연 2.75%, 생애최초 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45% 다 우대금 리 신설신규 분양주택 가구 - 연 0.1%p<시행일>2021.11.12<기존고객적용여부>□ 기본금리 인상 : 고정금리(미적용), 변동금리(적용) 다우대금리 신설 : 미적용------------<변경내용>□ 부동산전자계 약 우대금리 일몰기한 연장변경전 🗆 2020.12.31까지 적용변경후 🗆 2021.12.31까지 적용<시 행일>2021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----------<변경내용>□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기준 금액

변경변경선 : (2019년 기순, 2억8전8백만원)변경후 : (2020년 기순, 2억9전2백만원)<시행일 >2021.01.0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하변경전 □ 일반 : 연
1.95% ~ 연 2.70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65% ~ 연 2.40%변경후 🏻 일반 : 연 1.85% ~
연 2.40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55% ~ 연 2.10%<시행일>2020.10.30<기존고객적용
여부>고정금리: 미적용, 변동금리: 적용
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담당합니다.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(11566-9009)로 문
의하시기 바랍니다.<시행일>2020.07.17<기존고객적용여부>적용
<변경내용>□ 신혼가구 대상자 확
대변경전 □ 신혼가구변경후 □ 신혼가구(LH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자 중 만6세이하 자녀가 있
는 혼인가구 포함)<시행일>2020.07.17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<변경내용>□ 기본금리 인하변경
전 🗆 일반 : 연 2.00% ~ 연 3.15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70% ~ 연 2.75%변경후 🗆 일반
: 연 1.95% ~ 연 2.70%, 생애최초신혼가구 : 연 1.65% ~ 연 2.40%<시행일>2020.05.18<
기존고객적용여부>고정금리: 미적용, 변동금리: 적용
경변경전 : (2018년 기준, 3.71억원)변경후 : (2019년 기준, 3.91억원)<시행일>2020.01.17< 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0.2%, 미성년 2자녀가구: 0.3%, 다자녀(미성년 3자녀이상)가구: 0.5%변경후 - 미성년 1자녀
가구: 0.3%, 미성년 2자녀가구: 0.5%, 다자녀(미성년 3자녀이상)가구: 0.7%<시행일
>2019.12.31<기존고객적용여부>시행일 이후 신규접수분부터 적용하나, 2019.12.31 이전 취
급된 기존 계좌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자녀수가 증가할 경우 변경 우대금리 적용가능
<변경내용>□
(구입자금대출) 미성년 2자녀 이상 가구 호당 대출한도 확대변경전 □ 2억 4천만원이내변경후 □
2억 6천만원이내<시행일>2019.12.3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대금리 일몰기한 연장변경전 🗆 2019.12.31까지 적용변경후 🗆 2020.12.31까지 적용<시행일
>2019.12.31<기존고객적용여부>미적용
합산 순자산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
채현황'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(2018년 기준, 3.71억원)□ 자산기준 도입 신
설에 따른 자산기준 초과자에 대한 제재사항 추가대출실행 전 : 자산심사 후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
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대출불가대출실행 후 : 최종 자산심사결과 대출신청인
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결과 소득4분위 기준 초과한 경우▶ 소득4분위 기
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이내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에 연 0.2%p 가산▶ 소득4분위 기
준으로 초과된 금액이 1천만원 초과인 경우 신규 취급된 금리와 상관없이 연 5.0% 고정금리 적용
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이 자산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, 상환방법, 우대
금리, 원금상환 유예 등 기타 대출조건 변경을 제한□ 자산기준 도입 신설에 따른 원금 및 이자 선

본 공시내용의 유효기간상품개시일: 2014.01.02유효기간: 2025.07.04 ~ 2026.12.31 기한의 이익 상실에 대한 안내▶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 원리금을 납입기일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실제 납입일까지 납입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연체이자율을 적용하며,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이익 상실 시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.▶ 대출만기일 경과 등 기한의 이익 상실 시에는 기한이익 상실일로부터 3개월 이내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4%p, 3개월 초과는 총 대출잔액에 대하여 이자율 + 연 5%p가 적용됩니다.<기한 연체이자율(지연배상금률)이 연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10%가 적용됩니다.<기한의 이익이란?>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은행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▶ 연체가 계속되는 경우, 연체기간에 따라 『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』과 『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』에 의거 신용도판단정보 등록자로 등록되어 금융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고객께서 알아두실 사항▶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 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. 수입인지대금은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하며, 근 저당권설정비용 중 설정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(등록면허세, 지방세,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)은 은행이 부담하고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 및 감액/말소 등기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.<인지세>대출금액에 따른 인지세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.대출금액인 지세액5천만원 이하비과세5천만원 초과~1억원 이하7만원(각각 3만 5천원)1억원 초과~10억원 이하15만원(각각 7만 5천원)10억원 초과35만원(각각 17만 5천원)▶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 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 간 기금의 구입 및 전월세 자금 대출 이용이 제한됩니다.▶ 디딤돌대출을 받은 차주(부양조건 세대원 포함)는 대출실행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하여 전입세대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하고, 전입한 날로부터 2년까지 담보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. 만약 전입세대열람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.▶ 대출실행 이후 본건 담보주택 이외에 추가주택을 취득하는경우, 국토교통부로부터 회신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주택 미처분시 대출금을 상환해야됩니다.['24.6.19이후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] ☞ 다만, 별도로 정한 처분기한 및 예외 항목 등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

(http://nhuf.molit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 ▶ 대출조건 등은 정부의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. 또한 KB국민은행의 연체대출금(지급보증 대급금 포함) 보유, KB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친 자, 신용도 판단정보 등록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. ▶ 자산심사업무는 주택도시보증공사(HUG)에서 담당합니다. 관련 문의사항은 공사 콜센터

(11566-9009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▶ 기타 자세한 내용은 KB국민은행 영업점 또는 주택도시기금 전용상담센터(11599-1771)로 문의하시거나, 홈페이지(www.kbstar.com)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 ▶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포털사이트(http://nhuf.molit.go.kr)에는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다양한 내용이 안내되어 있습니다. ▶ 상품 가입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
유한책임대출 안내■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책임을 담보물(해당주택)에만 한정하는 대출(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)을 말합니다.■ 유한책임대출 심사평가 결과에 따라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유한책임대출을 적용할 수 있으며,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구입자금보증 또는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이용하여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적용 불가합니다.

필요서류□ 본인 신분증□ 매매(분양)계약서,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(1개월 이내 발급분), 전입세대확인서(동거인 포함)□ 등기권리증(소유권이전등기 후 신청시), 인감증명서(인감도장 포함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(최근 3개월이내 발급분)□ 주민등록등본(1개월이내 발급분, 결혼예정자는 배우자 예정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필요)□ 가족관계증명서(1개월이내 발급분: 단독세대주, 배우자분리세대, 결혼예정자 등)□ 결혼예정 증빙서류(결혼예정자의 경우):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□ 재직(사업영위) 및 소득확인서류(본인 및 배우자)*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필수 제출(소득종류 확인목적)*최근 2개년의 소득확인서류 제출- 근로소득자: 재직증명서(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첨부)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* 단,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회사가 확인되는 경우 재직증명서(재직회사 사업자등록증) 생략 가능-사업소득자 등: 사업자등록증명원 /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(연말정산용)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등 □ 우대금리 확인서류: 가족관계증명서, 혼인관계증명서(상세형), 기본증명서(귀화자), 장애인증명서, 청약(종합)저축통장 거래내역서 등□ (필요시)자산심사 : 부동산, 건축물, 자동차, 금융자산및 부채 등 자산확인서류* 상기 서류 이외에 대출진행에 따라 준비서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.[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5-2722-11호(2025.07.04)] / (유효기간 : 2025.07.04~2026.12.31)